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99
----------	-------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 의 자 : 김도읍 · 인요한 · 구자근

조배숙 · 이현승 · 장동혁

김상훈 · 권영진 · 김예지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도입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8개, 사업체의 매출액은 총 4조 4,294억원에 달하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총 22,359명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레저스포츠는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활동으로서 육상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 등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라.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레저스포츠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및 합병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레저스포츠업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레저스포츠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레저스포츠업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22조).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레저스포츠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처분을 위하여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8조).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저스포츠”란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육상레저스포츠: 육상에서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상레저스포츠: 수상 또는 수중에서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에서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활동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레저스포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레저스포츠시설”이란 레저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레저스포츠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4. “레저스포츠업자”란 제8조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담당자”란 레저스포츠업의 운영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설치검사”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검사”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하여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자가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레저스포츠시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레저스포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수상레저안전법」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항공안전법」
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7. 「관광진흥법」
8. 「국민체육진흥법」
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2. 「항공사업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레저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레저스포츠 진흥 정책의 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3.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레저스포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레저스포츠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레저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레저스포츠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레저스포츠시설의 진흥 및 안전 등에 필요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체계적 진흥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레저스포츠업 및 안전관리 등

제8조(레저스포츠업의 등록과 신고 등) ① 레저스포츠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업 외의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레저스포츠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레저스포츠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1. 제23조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 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레저스포츠업의 승계 등) ① 레저스포츠업자가 사망하거나 그营业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레저스포츠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레저스포츠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제10조(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레저스포츠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제 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가 제1항에 따라 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수리·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 또는 레저스포츠업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검사)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이하 “정기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레저스포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레저스포츠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및 재사용여부의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검사결과의 기록·보관) ① 레저스포츠업자와 안전검사기관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레저스포츠업자의 준수사항)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을 지킬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이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시설이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
5. 레저스포츠 업소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6. 이용약관 등 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7. 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사항을 지킬 것
8.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9.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② 레저스포츠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레저스포츠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교육) ① 레저스포츠업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는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과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험 등 가입) ①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레저스포츠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소규모인 시설이나 업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레저스포츠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관리·감독 등

제21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자에게 해당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레저스포츠시설·서류·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레저스포츠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레저스포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

4. 제1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레저스포츠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3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25조(예산 지원) 국가는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단체 등 지원) 국가는 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 개선 및 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제교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레저스포츠업의 영업을 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폐쇄 명령 또는 정지 명령을 받고 그 레저스포츠업의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

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저스포츠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레저스포츠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